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2,425,720	9,972,772
일반회계		302,867,935	9,086,038
특별회계		29,557,785	886,734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9,557,785	886,73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59,036	37,771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75,725	5,27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96,219	29,887
	공업단지특별회계	54,492	1,63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015,884	120,47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6,967	809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421,070	12,632
	기반시설특별회계	44,951	1,3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563,441	676,90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96,45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